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16

발의연월일 : 2022. 10. 4.

발 의 자: 강기윤·박형수·김용판

윤상현 • 이채익 • 윤주경

서정숙 · 김석기 · 서범수

전봉민 · 김선교 · 김도읍

박성중ㆍ이달곤 의원

(14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에 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등 일부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만 다른 보장기관으로의 신청이 가능한 실정임.

이로 인해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복지 취약계층의 경우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있어 각종 복지서비스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현 거주지에 사회보장급여 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 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법률 제 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중앙행정기관의"를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	
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	
다)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	
청권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	
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	
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u>중앙행정기관의</u> 장이 지	<u>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u>
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	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실
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	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
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u>의</u>
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	
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